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제정 : 1997. 4. 11  
개정 : 2008. 4. 16  
개정 : 2016. 11. 16  
개정 : 2018. 12. 14

**제1조** 논문(Paper)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분야 담당 편집위원에게 배정하며,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 분야의 전공자 중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 논문은 2명 이상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저자와 소속이 다른 심사위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 결과는 이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음을 알린다.

**제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에는 “채택 보류”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 (2) 주요 연구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심사위원의 채택 가부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이를 참고하여 가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논문이 본 학회의 논문원고 집필요령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이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재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